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0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24.8.23 개정·시행)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사업공모에 공동시행방식의 사업을 응모하려는 경우 공동시행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사업내용 등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안전재상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4.8.23)에 따른 공모사업 유형에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추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공급 유형(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비율(주택 호수의 전체 또는 일부) 규정,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정

나. 공모사업 절차 보완

- 공동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시행자 정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의 응모 가능 단계(입주자 모집공고 전) 규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임대계획 변경, 기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중소기업 기숙사로의 변경 등 안전 재상정 및 사업추진 보고사항에 사업 면적, 세대수, 세대유형, 담당자 등 기타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팩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044-201-3638, 044-201-4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